

# 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

결 재	★주무관	요금과장	
	박병국	04/17 이춘원	

우리사업소 관내 관악구 신림동 620-328 태성빌라 301호 수도계량기 망실된 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.

2014. 4. 17.

보고자 : 7급 성명 : 박 병 국(인)

## ■ 조사경위

- 현장민원과(이형석)신고에 의해

## ■ 조사일시 : 2014년 4월 17일

## ■ 조사대상

주 소	성 명	수전번호	업종	구경	기물번호	사유	비 고 (관리번호)
관악구 신림동 610-328 태성빌라 301호	김정화	3439	10	15	F08-00034890	망실	21989333

## ■ 조사내용

● 2014년 4월 17일 관내 관악구 신림동 610-328 태성빌라 301호 수도계량기 망실된

사항에 대해 조례위반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 바,

● 상기 주소지는 총 9가구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으로 현재 태성빌라 301호 계량기함에는 사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,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망실된 상태임.

● 수용가(김정화)는 한달 전부터 수도계량기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하나 모르고 시중에서 수도계량기를 구매하여 교체하고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두었다가 가득차서 버렸다고 함.(관련 사진 및 검침자료)

● 상기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 토대로 수용가(김정화)에게 확인서를 제출받았음.

## ■ 관련자료



사계량기(관악구 신림동 610-328 301호)

출입문(관악구 신림동 610-328 301호)

건물전경(관악구 신림동 610-328 301호)

● 검침자료(태성빌라 301호)

No	납기년월	검침일	고객번호	자원구분	업종	가구수	전월			당월			증감사유		특기
							검침코드	지점	사용량	코드	지점	사용량	코드	내용	
1	2014-04-30	2014-03-24	021989333	상	10	1	10	1644	54	10	1699	55			
2	2014-02-28	2014-01-24	021989333	상	10	1	10	1590	60	10	1644	54			
3	2013-12-31	2013-11-24	021989333	상	10	1	10	1530	59	10	1590	60			
4	2013-10-31	2013-09-24	021989333	상	10	1	10	1471	61	10	1530	59			
5	2013-08-31	2013-07-24	021989333	상	10	0	10	1410	62	10	1471	61			
6	2013-06-30	2013-05-24	021989333	상	10	0	10	1348	57	10	1410	62			
7	2013-04-30	2013-03-24	021989333	상	10	0	10	1291	63	10	1348	57			

● 검침자료(태성빌라 주계량기)

No	납기년월	검침일	고객번호	자원구분	업종	가구수	전월			당월			증감사유		특기
							검침코드	지점	사용량	코드	지점	사용량	코드	내용	
1	2014-04-30	2014-03-24	021989268	상	10	1	10	14006	296	10	14327	321			
2	2014-02-28	2014-01-24	021989268	상	10	1	10	13710	276	10	14006	296			
3	2013-12-31	2013-11-24	021989268	상	10	1	10	13434	342	10	13710	276			
4	2013-10-31	2013-09-24	021989268	상	10	1	10	13092	364	10	13434	342			
5	2013-08-31	2013-07-24	021989268	상	10	0	10	12728	344	10	13092	364			
6	2013-06-30	2013-05-24	021989268	상	10	0	10	12384	320	10	12728	344			
7	2013-04-30	2013-03-24	021989268	상	10	0	10	12064	365	10	12384	320			

■ 조사자 의견

● 상기 조사내용에 의하면 수용가는 약 한달 전부터 계량기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는 것도 모르고 시중에서 사계계량기를 구매하여 교체하였으며,

● 또한 태성빌라 주계량기 및 301호 검침자료를 확인한 바, 사용량이 일정한 것으로 보아 달리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징수를 면하려고 계량기를 망실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,

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「고의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」 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 하지 않고, 서울시 수도조례 제4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4조에 의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교체처리 및 급수설비에 대하여 행정지도 함으로서 종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첨부 : 확인서(계량기 망실) 1부. 끝.